##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03

발의연월일: 2021. 8. 11.

발 의 자:윤준병·장철민·김주영

오영환 · 김수흥 · 전재수

김성주 • 고용진 • 위성곤

양정숙 · 이용빈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을 18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은 25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음.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임.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27일 선거권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피선거권의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피선거권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 중 3 0세 미만 국회의원이 2명, 40세 미만 국회의원이 13명으로 청년의원 비율이 낮은 국가에 속함. 이와 같은 청년의 낮은 대표성은 다양한 청 년문제의 해결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등 청년에 대한 후보자 추천 할당제를 도입함으로써 청년의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항 및 제47조제3항 등).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25歲"를 "20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5歲"를 "20세"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여성으로 추천하되"를 "여성으로,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2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으로 추천하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으 로"를 "여성으로, 100분의 10 이상을 청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를 "여성으로, 1명 이상을 청년으로 추 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매 홀수에 여성이자 청년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경우에는 여성후보자 1명과 청년후보자 1명을 각각 추천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여성이자 청년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경우에는 여성후보자 1명과 청년후보자 1명을 각각 추천한 것으로 본다.

제49조제8항 본문 중 "순위를"을 "순위 또는 청년후보자 추천의 비율을"로 한다.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단 서 중 "여성후보자를"을 "여성후보자 및 청년후보자를"로, "여성후보자의"를 "여성후보자 또는 청년후보자의"로 한다.

② 제47조제3항에 따른 청년후보자 추천의 비율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 는 해당 선거구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 로 한다.

제60조의2제5항 전단 중 "제52조제3항의"를 "제52조제4항의"로 한다. 제192조제3항제2호 중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무효 사유에"로 한다. 제219조제2항 중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23조제1항 중 "제52조제1항·제3항"을 "제52조제1항·제2항·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피선거권) ① (생 략)	제16조(피선거권) ① (현행과 같
	<u></u> 이
② 25歲 이상의 國民은 國會議	② <u>20세</u>
員의 被選擧權이 있다.	
③ 選擧日 현재 계속하여 60日	③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	
는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住民으로서	
25歲 이상의 國民은 그 地方議	20세
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	
의 被選擧權이 있다. 이 경우 6	
0日의 期間은 그 地方自治團體	
의 設置・廢止・分割・合併 또	
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第47條(政黨의 候補者推薦) 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 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 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 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 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 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

3
<u>여성으로, 100분의 10 이</u>
<u>상을 청년(20세 이상 34세 이하</u>
인 사람을 말한다)으로 추천하
<u>되</u>
<u>이 경우 매 홀수에 여성</u>
이자 청년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경우에는 여성후보자 1
명과 청년후보자 1명을 각각 추
천한 것으로 본다.
4
4
4
4
(4)

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 (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 7 (생 략)

⑧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 는 候補者登錄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錄申請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選擧權者의 推薦狀·寄託金 및 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

	여성으로, 1명 이
	상을 청년으로 추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여성이자 청년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경우에
	는 여성후보자 1명과 청년후보
	자 1명을 각각 추천한 것으로
	본다.
제	<del></del> 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	(현행과 같음)
	8
	순위 또는 청년후보
	<u> </u>

록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擧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그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야 한다.

⑨ ~ ⑤ (생 략)제52조(등록무효) ① (생 략)

<신 설>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

⑨ ~ ⑩ (현행과 같음)
세52조(등록무효) ① (현행과 같
<u>о</u>
② 제47조제3항에 따른 청년후
보자 추천의 비율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
원후보자 또는 해당 선거구의
3 9 9 - 3 9 3 - 3 3 5 5 3 3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u>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주보자의</u>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수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u>③</u>·<u>④</u> (생 략)

-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7 ④ (생 략)
  - ⑤ <u>제52조제3항의</u> 규정은 예비 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 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 ⑥ ~ ⑫ (생 략)
-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 選無效 등) ①・②(생 략) 選無效 등) ①・②(현행과 같

여성후보자 및 청년후보자를
여성후보자 또는 청년후보
자의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제52조제4항의</u>
⑥ ~ ⑫ (현행과 같음)
第192條(被選擧權喪失로 인한 當
明 fr 土 ( ) ( ) ( ) ( ) ( ) ( ) ( )

음)

- ③ 當選人이 任期開始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하다.
- 1. (생략)
- 2. 當選人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의 제2항 및 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 3. (생략)
- ④ ⑤ (생 략)

제219조(선거소청) ① (생 략)

②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選擧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政黨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日부터 14日 이내에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때에는 當選人을, 제190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

③
1. (현행과 같음)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무
<u>효 사유에</u>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219조(선거소청) ① (현행과 같
<u>♥</u> )
②
<u>제52조</u>
제1항부터 제4항까지

・ 공고・ 통지) 내지 第191條(地 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 는 때에는 당해 選擧區選擧管 理委員會委員長을 각각 被訴請 人으로 하여 지역구시 · 도의원 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 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自治 區・市・郡議員選舉 및 自治區 ・市・郡의 長 選擧에 있어서 는 市・道選擧管理委員會에, 비 례대표시 · 도의원선거, 지역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市・道知事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다.

#### ③ ~ ⑦ (생 략)

第223條(當選訴訟) ① 大統領選舉 및 國會議員選擧에 있어서 당 선의 효력에 異議가 있는 政黨 (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 다) 또는 候補者는 當選人決定 日부터 30日이내에 <u>제52조제1</u> <u>항・제3항</u> 또는 제192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

① <i>(</i> ) (청케리 가 ()
③ ~ ⑦ (현행과 같음) 第223條(當選訴訟) ①
表223 除( 苗 迭 )
제52조제1
<u> </u>

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當選 人을,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項・第2 項, 第188條(地域區國會議員當 選人의 決定・公告・통지)第1 項 내지 第4項, 第189條(比例代 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 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 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 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定의 違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大 統領選擧에 있어서는 그 當選 人을 決定한 中央選擧管理委員 會委員長 또는 國會議長을, 國 會議員選擧에 있어서는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委員長皇 각각 被告로 하여 大法院에 訴 를 제기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